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30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□ 변경 사항: ①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
- ②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
- ③ 제7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- ⑥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7. 10.

□ 변경 내용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제7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-	<u>2024. 6. 27 기준</u> <u>2024. 5. 31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 평균 수익률)	제7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4. 6. 27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5. 31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 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</u> <u>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 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 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 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</u> <u>호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 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 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 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 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 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 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환매방법	환매대금 지급일 변경	- 17시 이전: 5영업일 기준가격 으로 <u>9영업일</u> 에 지급 - 17시 경과후: 6영업일 기준가 격으로 <u>10영업일</u> 에 지급	- 17시 이전: 5영업일 기준가격 으로 <u>7영업일</u> 에 지급 - 17시 경과후: 6영업일 기준가 격으로 <u>8영업일</u> 에 지급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〈신 설〉	<u>2024. 7. 10 : 환매대금 지급일</u> <u>변경(9(10)영업일 지급 →</u> <u>7(8)영업일 지급)</u>

	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 자산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 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-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 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〈신 설〉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 자산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 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- 트러스톤 글로벌주식 증권모 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<u>2024. 7. 10 :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(9(10)영업일 지급 → 7(8)영업일 지급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5. 31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 합투자기구에 관 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5. 31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 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 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 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 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 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(생 략)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 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 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 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 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 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(생 략)
10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 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</u> <u>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 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 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

		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	<u>표준편차 : 5.72%</u> 〈신 설〉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2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표준편차</u>	<u>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 : 12.33%</u> - 위험등급 변경 내역 : <u>2024.7.10 :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“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”에서 “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” 기준으로 변경</u>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2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〈신 설〉 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7시[오후5시]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〉</u> 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7시[오후5시]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

		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9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시[오후5시]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10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	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7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시[오후5시]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8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7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-	<u>2024. 6. 27 기준</u> <u>2024. 5. 31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200만원</u> (공적 연금소득 제외) <u>1,200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3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500만원</u> (공적 연금소득 제외) <u>1,500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4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7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4. 6. 27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7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4. 6. 27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7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4. 6. 27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5. 31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25기(2022.12.31)</u> <u>제24기(2021.12.31)</u>	<u>제26기(2023.12.31)</u> <u>제25기(2022.12.31)</u>

다. 최근 2 개 사 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	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 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5. 31 기준</u>